

촉탁직 인사 규정

제정 2022. 05. 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계약직 중 촉탁직에게 적용할 인력관리의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(산학협력단 제외)의 계약직 중 촉탁직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“촉탁직”이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84조에 의하여 임용되어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 중 본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을 말한다.

제4조(법률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, 기타 노동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제5조(활용기준) 촉탁직은 본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술과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재고용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부서) 촉탁직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처장이 관장한다.

제7조(채용) 촉탁직의 채용은 공개채용과는 별도로 소속부서의 부서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채용한다.

제8조(근로조건) ①촉탁직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또는 당해년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(70점)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.

②촉탁직은 계약기간 종료로 당연퇴직한다.

③촉탁직은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만 61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퇴직한다. 단, 기술직 및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소속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거

나, 대학 인력 수급 계획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한다.

제9조(임금) ①촉탁직의 임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3호봉으로 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촉탁직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 규정) 촉탁직의 채용기준, 채용절차, 복무, 신분보장, 포상 및 징계, 근로관계의 종료, 보건 및 재해보상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직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294호, 2022.05.16.)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